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91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용연, 김제리, 정진술,
양민규, 권순선, 이영실,
김화숙, 김경영, 이은주,
송아량, 이병도, 김소양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립병원의 경우 근속연수 감소와 잦은 이직 등으로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체계적 인적자원 관리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서울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6호)
-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제1항에서 3항)
- 시장이 시립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립병원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 시장은 시립병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 성장기여 및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제1항에서 제3항)
- 시장이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호,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업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인사 및 평가”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6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병원의 직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다.

③ 병원의 직원이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병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시장은 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병원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

② 제1항의 병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기관 및 혁신사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0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 2에 따른 의료인의 보호

7.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제23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u>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u></p> <p>7.·8. (생략)</p> <p>9.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보칙</u></p> <p><u><신설></u></p>	<p>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6.·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8. (현행 제9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인사 및 평가</u></p> <p>제20조(교육) ① <u>시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6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u></p> <p>② <u>병원의 직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다.</u></p> <p>③ <u>병원의 직원이 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병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이를 병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p> <p>1. 2. (생략)</p> <p>〈신설〉</p> <p>3. ~ 5.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1조(표창) 시장은 병원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있는 병원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제22조(평가) ①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p> <p>② 제1항의 병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기관 및 혁신사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포상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5조의 2에 따른 의료인의 보호</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7.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p> <p>제6장 보칙</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생 략)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9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